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中国农业政策
중국농업정책브리핑
Agricultural policyin China | 제09-01호

2009년도 1/4분기 주요 농업정책 동향

6년 연속 삼농문제 주제 '중앙 1호 문건' 발표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04년부터 연속 6년째임.

–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2009년도 농정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주제로 하고 있음.

– 2009년 '중앙 1호 문건' 제목: "2009년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2009年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的若幹意見》; 中發[2009] 1號)"

○ 2009년 '중앙 1호 문건'은 ①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②농업생산의 안정적 발전, ③농업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 강화, ④농업경영제도의 개선 및 안정, ⑤도농통합발전 등 5가지의 2009년 농정 목표와 28가지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Ⅰ. 농업정책 브리핑' 참조)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제정

○ 『식품안전법』이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으며,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작성: 전형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hjchon@krei.re.kr)

– 『식품안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 표준, 제4장 식품 생산·경영, 제5장 식품 검사, 제6장 식품 수출입, 제7장 식품 안전사고 처리, 제8장 관리감독,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등 총 10장 104조로 구성되어 있음.(법률 전문은 'Ⅳ. 정책자료' 참조)

– 『식품안전법』은 1995년 제정되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던 『식품위생법』의 대체 법률임.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중국산 식품의 안전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법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4년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에 착수한 후 약 4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식품위생법』을 대체하여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였음.

– 2004년 7월 21일 국무원 제59차 상무위원회와 2004년 9월 1일자 국무원 명의의 문건(國務院《關於進一步加強食品安全工作的決定》; 國發[2004]23號)을 토대로 국무원 법제반(法制辦)은 『식품위생법』 수정 영도소조(領導小組)를 구성하고 개정에 착수하여 『식품위생법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국무원 법제반은 각계 대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식품위생법수정(초안)』을 『식품안전법(초안)』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년 10월 31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한 후 2008년 4월 15일 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음.[1]

○ 국무원 판공실은 2009년 6월 1일 『식품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3월 4일 '식품안전법의 충실한 관철 및 시행에 관한 통지'[2]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하였음.

○ 국무원 법제반은 2009년 4월 24일 『식품안전법실시조례(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포하고 5월 4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확정하여 2009년 6월 1일부터 『식품안전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임.

---

1 『식품안전법』 제정 동향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식품안전법(초안)』은 『중국농업동향』 제1권 제1호 'Ⅰ. 농업정책 브리핑'과 'Ⅳ. 정책자료' 참조

2 國務院辦公廳《關於認真貫徹實施食品安全法的通知》; 國辦發[2009]25號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法)』 제정 예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2008년 12월 27일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초안)』 전문을 사회에 공표하고 2009년 2월 15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최종 제정할 예정임.

○ 『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법(초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재기구와 중재원, 제3장 신청 및 처리, 제4장 중재법정, 제5장 법정 개정과 중재 판결, 제6장 부칙 등 총 6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음.

축산업 비교우위지역 배치계획(2008~2015년)

○ 중국 농업부는 2003년 1월 29일 총 11개 품목(쌀,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사탕수수, 사과, 감귤, 돼지, 젖소)이 포함된 '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3~2007년)'[3]을 발표하고 시행한데 이어, 2008년 8월 22일 총 16개 품목(기존 11개 품목에 육우, 양, 수산물, 감자, 천연고무 추가)이 포함된 '전국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2015년)'[4]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농업부는 2009년 1월 24일 '전국 육우, 양, 젖소 및 돼지 비교우위지역 배치계획(2008~2015년)에 관한 통지'[5]을 통해 '전국비교우위 농산물 지역배치 계획(2008~2015년)'에 포함된 4개 축종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발표하였음.

1. 육우

○ 육우 비교우위지역은 중원(中原), 동북(東北), 서북(西部), 서남(西南)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총 17개 성(자치구·직할시) 207개 현(縣)·시(市)를 포괄함.

- 207개 현·시는 2007년도 전국 육우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35.0%와 40.7% 차지

3 農業部《關於引發《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2003-2007年)》的通知》; 農計發[2003]1號
4 農業部《關於引發《全國優勢農產品區域布局規劃(2008-2015年)》的通知》; 農計發[2008]20號
5 農業部《關於引發全國肉牛肉羊奶牛和生豬優勢區域布局規劃(2008-2015年)的通知》; 農牧發[2009]2號

○ 중원 육우지역

– 4개 성 51개 현: 산동성 14개 현, 하남성 27개 현, 하북성 6개 현, 안휘성 4개 현

– 경진익(京津冀)[6], 장삼각(長三角)[7], 환발해(環勃海)[8] 경제권을 위한 우육 생산기지 조성

○ 동북 육우지역

– 5개 성(자치구·직할시) 60개 현: 길림성 16개 현, 흑룡강성 17개 현, 요녕성 15개 현, 내몽고자치구 7개 현(旗) 및 하북성 북부 5개 현

– 북부지역 주민의 우육 소비수요 충족, 일본, 한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가 시장개척

○ 서북 육우지역

– 4개 성(자치구·직할시) 29개 현: 신강위그루족자치구 16개 현, 감숙성 9개 현(시), 섬서성 2개 현, 영하회족자치구 2개 현(旗)

– 서북지역 주민의 우육 소비수요 충족, 이슬람(淸眞) 우육 생산을 위주로 하며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의 고품질 우육 생산

○ 서남 육우지역

– 5개 성(자치구·직할시) 67개 현(시): 사천성 5개 현, 중경시 3개 현, 운남성 35개 현(시), 귀주성 9개 현(시), 광서장족자치구 15개 현(시)

– 서남지역의 우수 우육 생산 및 공급기지 건설

2. 젖소

○ 젖소 비교우위지역은 대도시 교외지역(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동북지역(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자치구), 화북지역(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 서북지역(신강위그르족자치구, 섬서성, 영하회족자치구)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총 13개 성(자치구·직할시) 313개 현(목장) 포괄

○ 대도시(京津滬) 젖소지역

–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근교지역 17개 현 포함. 2007년 현재 17개 현의 젖소 사육두수와

6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의 석가장(石家莊), 당산(唐山), 승덕(承德), 장가구(張家口), 보정(保定), 랑방(廊坊), 진황도(秦皇島), 창주(滄州), 한단(邯鄲), 형대(邢台), 형수(衡水) 등을 포함하는 경제권

7 상해시, 소주(蘇州), 무석(無錫), 남경(南京), 합비(合肥), 회안(淮安) 등을 포함하는 경제권

8 천진시, 하북성, 산동반도(山東半島)를 포함하는 경제권

우유 생산량은 각각 33.9만 두, 131.6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2.5%와 4.1% 차지

- 젖소 사육두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젖소의 평균 단수를 2015년까지 6.5톤에서 7.5톤으로 제고. 기계화 집유 및 규모화 사육, 낙농업 현대화 실현. 대도시시장에 우유 공급 보장

○ 동북-내몽고 젖소지역

- 흑룡강성, 요녕성 및 내몽고자치구의 117개 현(목장) 포함. 2007년 현재 117개 현(목장)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량은 각각 471.1만 두, 1,332.1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34.6%와 41.7% 차지
- 2015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730만 두(연평균 증가율 5%), 우유 생산량 2,700만 톤(연평균 증가율 8%), 평균 단수 6.3톤으로 증대

○ 화북 젖소지역

- 하북성, 산서성, 하남성, 산동성의 111개 현(목장) 포함. 2007년 현재 111개 현(목장)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량은 각각 294.2만 두, 1,654.9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21.6%와 20.5% 차지
- 2015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540만 두(연평균 증가율 7%), 우유 생산량 1,700만 톤(연평균 증가율 10%), 평균 단수 3.7톤에서 5.5톤으로 증대

○ 서북 젖소지역

- 신강위그루족자치구, 섬서성, 영하회족자치구의 68개 현(목장) 포함. 2007년 현재 68개 현(목장)의 젖소 사육두수와 우유 생산량은 각각 250.9만 두, 352.6만 톤으로 전국 사육두수와 생산량의 18.4%와 11.1% 차지
- 2015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390만 두(연평균 증가율 5%), 우유 생산량 800만 톤(연평균 증가율 9%), 평균 단수 1.4톤에서 3.3톤으로 증대

3. 돼지

○ 돼지 비교우위지역은 연해지역(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 동북지역(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중부지역(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서남지역(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총 19개 성(자치구·직할시) 437개 현 포괄

– 437개 현의 2007년도 돼지 사육두수와 도축두수는 각각 2.2억 마리와 3.2억 마리로 전국 사육두수와 도축두수의 50%와 56% 차지. 이들 지역의 1인당 도축두수는 0.97마리로 전국 평균 0.42마리의 2.3배

○ 연해(沿海) 돼지 생산지역

–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의 55개 현

– 주변에 홍콩, 동남아 등 전통적인 돼지고기 무역 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돼지사육 여건이 좋고, 규모화 및 집약화 수준이 높으며 시장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 일정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기지를 조성하여 수출 증대에 주력

○ 동북 돼지 생산지역

–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의 30개 현

– 동북지역은 옥수수 주산지로 사료자원이 풍부하며 생산비가 낮고 생산의 규모화, 조직화 수준이 높음. 또한 돼지가공업이 발전하여 국내 유명기업의 가공기지 위치

– 높은 가격경쟁력을 발휘하여 고표준의 생산기지 조성, 대규모 기간기업 육성, 가공기술 개발 등으로 북경시, 천진시 등 대도시로의 출하 확대 및 대 러시아 수출 확대

○ 중부 돼지 생산지역

– 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강서성,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의 226개 현

– 중국의 전통적인 돼지 생산지역이자 식량 주산지. 식량자원이 풍부하여 돼지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것이 특징. 또한 지역 인구가 많아 소비시장의 잠재력이 크고 주변에 상해시, 광동성 등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이 인접하여 시장규모가 큼.

– 전통적인 사육방식 개선 및 농업과 축산업의 연계 강화, 규모화 및 표준화 수준 제고, 도축 및 가공능력 제고, 우량종 육종 및 번식체계 완비, 우수 종자 이용 확대, 지역 시장의 확대와 중대형 도시로의 공급 증대

○ 서남 돼지 생산지역

– 광서장족자치구,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귀주성의 126개 현

– 중국의 전통적인 돼지 생산지역으로 대부분 산간구릉지역. 지역 사정에 맞게 생태형 유기 돼지 사육을 확대하고 고표준화 및 규모화 사육을 확대하는 한편 돼지종자 개량 등으로 지역 내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외 시장 개척으로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

2009년도 우량종자보조, 농기계구입보조제도 운영 방안

○ 중국 농업부와 재정부 판공실은 3월 3일 "2009년 '중앙 1호 문건'의 관철, 우량종자보조사업의 관리 강화, 정책효과 제고, 자금 사용효율 증대, 농민들의 생산 적극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중앙재정 농작물 우량종자 보조항목 실시 지도의견'[9]을 발표하였음.

– 우량종자보조사업을 통해 올해 식량 재배면적은 1억 720만 ha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량은 5억 톤 이상을 보장하며, 단수 제고, 품종구조 개선, 식량 품질개선 등 보장. 면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570만 ha와 750만 톤 수준 유지

– 보조 범위: 벼, 밀, 옥수수, 면화는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대두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자치구 등 4개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보조 실시

– 보조 대상: 생산과정에서 우량종자를 사용하는 농민(농장 노동자 포함)

– 보조 기준: 조생종 벼, 밀, 옥수수, 대두는 ha당 149.3위안, 중생종 및 만생종 벼, 면화는 ha당 223.9위안

○ 중국 농업부와 재정부는 2008년 12월 26일 '2009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10]를 발표하였음.

– 농기계구입보조 정책은 200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4~2008년 동안 중앙재정의 보조금 총액은 69.7억 위안으로 농민들의 소비액 373억 위안, 농기계공업 판매액 443억 위안을 창출하여 내수 확대에 크게 기여

– 중앙재정의 농기계구입보조금 총액이 2008년 40억 위안에서 2009년 100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540억 위안의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640억 위안의 농기계공업 판매액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9 農業部辦公廳,財政部辦公廳《關於引發《2009年中央財政農作物良種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的通知》: 農辦財[2009]20號

10 農業部,財政部《關於引發《2009年農業機械購置補貼實施方案》的通知》: 農財發[2008]190號

- 2007년 말 현재 경운, 파종, 수확 등 농작업 기계화 수준은 42.5%로 일본의 70년대 중반, 한국의 8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 2020년에 기계화 수준을 70%까지 증가시킬 계획

○ 2009년 농기계 구입보조 실시방안

- 실시 범위: 전국의 모든 농업 및 축산업 현(縣). 단, 보조금은 대규모 식량·면화 생산 현, 대규모 가축사육 현, 주혈흡충증 발생 현, 사천성 문천지역 지진피해 현, 환경보전형 경작 시범 현, 전국 100개 농기계화 시범지역 소재 현에 우선적으로 분배.
- 보조대상: 실시 범위와 보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종농민, 축산농민, 어민(농장 노동자 포함), 농기계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생산경영조직, 현지 공상부문에 등록을 마친 낙농전문합작사 등을 포함
- 보조금 규모: 2008년 40억 위안 → 2009년 100억 위안
- 보조대상 농기계: 2008년 9개 대분류, 18개 소분류, 50개 품목 → 2009년 12개 대분류, 38개 소분류, 128개 품목
- 보조 기준: ①전국적으로 구매가격의 총 30% 보조. 단, 주혈흡충증 발생지역은 50%의 보조비율을 유지하고, 사천성 문천지역 지진피해 현은 보조비율을 50%로 확대.②단일 농기계 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최고 5만 위안 이하, 100마력 이상의 대형 농기계는 최고 12만 위안까지 보조
- 농가당 구매가능 수량은 농기계 1세트 4대(주 농기계 1대+부속 농기계 3대) 이하

5천만 톤 식량증산 계획(2009~2020년) 발표

○ 2009년 4월 8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전국 5천만 톤 식량증산 계획(全國新增1000億斤糧食生產能力規劃(2009~2020年))'이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음.

- 《계획》은 2020년까지 식량 생산능력을 현재의 5억 톤에서 5억 5천만 톤 이상으로 증대시키고, 경지면적을 1억 2,060만 ha, 절대농지면적을 1억 452만 ha, 식량작물 파종면적을 1억 586만 ha 수준으로 유지하며, 식량작물의 단수를 ha당 5.2톤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계획》은 과학적으로 식량 증산기술을 확정하고 ①저생산성 농지 개량, ②우량 품종 육종 및 보급 확대, ③경지이용률 제고, ④중대 기술조치 보급, ⑤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⑥병충해 예방 및 방제 등 6가지 방면에서 식량증산 잠재력을 발굴할 것을 강조하였음.

가뭄극복조례(抗旱條例) 제정

○ 중국 정부는 올해 초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대응하여 사상 처음 가뭄 1급 경계령을 발동하고 가물 극복을 위한 물자 구입과 밀 재배지역(특히 화북 밀 주산지)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였음.

○ 올해 초 심각한 가뭄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국무원은 2월 11일 제49차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뭄극복조례(抗旱條例)'를 2월 26일 공포하였음.

– 가뭄극복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가뭄재해 예방, 제3장 가뭄재해 극복, 제4장 재가뭄재해 복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등 총 6장 65조로 이루어져 있음.

○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북부지역(특히 화북지역)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강(長江)의 물을 화북지역으로 끌어오는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①동선(東線) 프로젝트(장강 하류 강소성 양주(揚州)에서 천진에 이르는 1,156km), ②중선(中線) 프로젝트(장강 중류 단강구(丹江口) 저수지에서 북경과 천진에 이르는 1,267km), ③서선(西線) 프로젝트(황하 상중류지역과 위하관(渭河關) 평야지역의 물부족 문제 해결) 등 3개 프로젝트로 구분됨.

<중국의 남수북조(南水北調) 프로젝트 개념도>

- 동선 및 중선 제1기 프로젝트는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시작되어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2~2008.8월까지 215.9억 위안이 투자되었음.
-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213억 위안(중앙재정 65억 위안, 남수북조 프로젝트 기금 20억 위안, 은행 대출 128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임.

도농통합 개혁·발전 모델 시범 실시

○ 중국 국무원은 2009년 1월 26일 중서부지역의 유일한 직할시로서 전국 도농통합 개혁·발전 시범지역인 중경시를 대상으로 '중경시 도농통합 개혁 및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11]를 발표하였음.

- 《의견》은 개혁·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①도농 통합, 도농 균형발전 촉진, ②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하여 발전방식 전환, ③인본주의(人本主義) 정신 견지, 조화로운 사회건설 추진, ④개혁 개방 견지, 체제 시스템의 혁신 등 4가지를 제시하였음.

○ 《의견》은 개혁·발전의 주요 목표로 ①2012년까지 중요 사항의 개혁을 추진하여 도농 통합발전의 제도적 틀 완성, ②2020년까지 각종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도농 통합발전의 제도적 체계를 형성하고, 서부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목표 실현 등 2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음.

- 2012년까지 중경시의 1인당 GDP를 전국 평균에 근접시키고, 도농 주민소득이 서부지역내 고소득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소득격차를 점차 축소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이 전국 평균에 도달하도록 하며, 에너지 소비를 2007년 대비 20% 절약하고, 삼협댐지역 장강 지류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
- 2020년까지 중경시의 1인당 GDP가 전국 평균을 초과하도록 하고, 도농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소득격차를 더욱 축소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도록 하며, 에너지 소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삼협댐지역 장강 지류의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6월 7일 '중경시와 성도시에 전국 도농 통합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통지'[12]를 통해 중경시와 사천성 성도시를 '도농 통합

11 國務院《關於推進重慶市統籌城鄉改革和發展的若幹意見》; 國發[2009]3號
12 國家發展改革委員會《關於批準重慶市和成都市設立全國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點區的通知》; 發改經體[2007]1248號

발전 종합개혁 시범지구'로 선정한 바 있음(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형진. 2007. 중국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88 참조).

2009년도 1/4분기 주요 농업관련 문건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3.30	商建發 [2009]114호	《자동차 소비에 관한 의견 關於促進汽車消費的意見》 ·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3.30	農辦醫 [2009]14호	전국 동물위생 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 장정 《全國動物衛生風險評估專家委員會章程》 / 농업부 판공실
3.25	農辦醫 [2009]12호	산가축 경영시장 정비 행동방안《活禽經營市場專項整治行動方案》 · 농업부 수의국
3.24	發改價格 [2009]793호	2009년 담배잎 수매가격 및 보조정책에 관한 통지 《關於2009年煙葉收購價格及補貼政策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연초전매국
3.23	財綜 [2009]21호	남수북조 프로젝트기금의 연도별 납부액 및 관련문제 조정에 관한 통지 《關於調整南水北調工程基金分年度上繳額度及有關問題的通知》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남수북조반, 감사원(審計署)
3.18	發改經貿 [2009]728호	당면한 봄철 화학비료 공급업무를 잘할 데 대한 통지 《關於做好當前春耕化肥供應工作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철도부, 농업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중화전국소비조합중앙회(中華全國供銷合作總社)
3.18	-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촉진, 도농 통합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關於促進農業穩定發展農民持續增收推動城鄉統籌發展的若幹意見》 · 국토자원부
3.14	農辦市 [2009]7호	농업정보 통계조사 기점 조정방안《農業信息統計調查基點調整方案》 · 농업부 판공실
3.12	農辦農 [2009]26호	2009년도 전국 토지측량 및 비배관리업무 방안 《2009年全國測土配方施肥工作方案》 / 농업부 판공실
3.12	農經發 [2009]3호	2009년도 농민부담 경감 업무를 잘할 데 대한 의견 《關於做好2009年減輕農民負擔工作的意見》 · 농업부, 국무원 규풍반(糾風辦),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반, 교육부, 신문출판본부(新聞出版總署)
3.10	財建 [2009]104호	자동차 오토바이하향사업 실시방안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汽車摩托車下鄉實施方案》的通知》 ·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3. 9	財金 [2009]22호	원유 수매 대출금 중앙재정 이자할인정책 기한 연장에 관한 통지 《關於延長原料奶收購貸款中央財政貼息政策期限的通知》 / 재정부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3. 9	商建發 [2009]98호	농업 생산수단의 유통체계의 완비에 관한 의견 《關於完善農業生產資料流通體系的意見》 ·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공상은행 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중화전국소비조합중앙회
3. 5	農辦財 [2009]20호	2009년도 중앙재정 농작물 우량종자보조 항목 실시 지도의견 《2009年中央財政農作物良種補貼項目實施指導意見》 / 농업부, 재정부
3. 4	國辦發 [2009]25호	식품안전법의 충실한 관철 및 시행에 관한 통지 《國務院辦公廳關於認真貫徹實施食品安全法的通知》 / 국무원
3. 2	財金 [2009]15호	신형 농촌금융기구 비용 보조 실시에 관한 통지 《關於實行新型農村金融機構定向費用補貼的通知》 / 재정부
3. 2	財金 [2009]16호	현지역 금융기구의 농업관련 대출 증대 장려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關於開展縣域金融機構涉農貸款增量獎勵試點工作的通知》/ 재정부
3. 2	주석령 9호	《식품안전법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
2.27	國辦發 [2009]11호	"이장촉치"실행으로 심각한 농촌환경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시방안 關於實行"以獎促治"加快解決突出的農村環境問題的實施方案》 · 국무원 판공실
2.26	財建 [2009]48호	가전하향 사업 실시 강화에 관한 통지 《關於加大家電下鄉政策實施力度的通知》/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2.26	국무원령 제552호	《가뭄극복조례 中華人民共和國抗旱條例》 / 국무원
2.23	教師 [2009]1호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교 교사 임용 계획의 지속 실시에 관한 통지 《關於繼續組織實施"農村義務教育階段學校教師特設崗位計劃"的通知》 · 교육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2.23	財教 [2009]2호	농촌 의무교육 경비 보장체계 개혁자금관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 《關於進一步加強農村義務教育經費保障機制改革資金管理的若幹意見》 · 재정부, 교육부
2. 9	發改電 [2009]35호	농업가뭄극복 기름, 전력 운송 공급보장업무를 잘할데 대한 긴급통지 《關於切實進一步做好農業抗旱油電運保障供應工作的緊急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실
2. 9	財教 [2009]2호	농촌 의무교육경비 보장기제 개혁 자금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關於進一步加強農村義務教育經費保障機制改革資金管理的若幹意見》 · 재정부, 교육부
2. 9	發改環資 [2009]378호	농부산물 종합이용 계획에 관한 지도의견 《關於編制秸稈綜合利用規劃的指導意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2. 6	農質發 [2009]2호	2009년도 농산물 품질안전 정비 및 연간 법 집행 활동 실시방안 《2009年農產品質量安全整治暨農產品質量安全執法年活動實施方案》 · 농업부
2. 6	發改價格 [2009]368호	칼륨비료가격 관리정책에 관한 통지《關於完善鉀肥價格管理政策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계속)

일자	문건 번호	문건 제목 및 관련 부처
2. 4	-	토지이용 총체계획 편제 심사 방법《土地利用總體規劃編制審查辦法》 · 국토자원부
2. 2	-	농업산업화 대규모 기간기업 발전 합작 지원에 관한 의견 《關於進一步加強合作支持農業產業化龍頭企業發展的意見》 · 농업부, 중국농업발전은행
2. 1	中發 [2009]1호	《2009년도 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 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農業發展農民增收若幹意見》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1.26	國發 [2009]3호	중경시 도농통합 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國務院關於推進重慶市統籌城鄉改革和發展的若幹意見》 / 국무원
1.24	發改電 [2009]19호	2009년 벼 최저수매가격 인상에 관한 통지 《關於提高2009年稻穀最低收購價格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량국, 중국농어발전은행
1.24	發改價格 [2009]268호	화학비료 가격 형성 시스템 개혁에 관한 통지 《關於改革化肥價格形成機制的通知》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1.20	衛婦社發 [2009]12호	농촌 임산부의 입원 분만 업무를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하달에 관한 통지 《關於印發《關於進一步加強農村孕產婦住院分娩工作的指導意見》的通知》 · 위생부, 재정부
1.19	財預 [2009]5호	촌단위 공익사업 일사일의 중앙재정 장려 및 지원사항에 관한 통지 《關於村級公益事業一事一議中央財政獎補事項的通知》 / 재정부
1. 9	-	돼지가격의 과도한 하락 방지 조절 방안(잠행) 《防止生豬價格過度下跌調控預案(暫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